

IV. 미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⁶⁾

1. 개관 및 도입 배경

미국의 최초 퇴직연금제도는 1875년 설립된 American Express Company Plan으로 알려진다. 1880년에 두 번째 퇴직연금제도가 볼티모어/오하이오 철도회사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이후 반세기 동안 400 여개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초기의 이런 퇴직연금제도는 주로 철도, 은행, 공공시설 부문에서 도입되었다. 제조업 부문에서의 퇴직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도입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대다수 제조업체들의 연혁이 짧아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적(私的) 퇴직연금제도는 1940년대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하여 1950년대 말 이후에는 보편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 배경으로는 첫째, 근로자가 노년층이 되었을 때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둘째, 유능한 근로자의 고용과 장기 근속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임금 인상을 조절하면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노사관계의 평화적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유용한 방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모든 사적 퇴직연금제도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401(a)항이 정하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세제적격연금으로써 설계된다.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제도가 전통적인 설계 형태이지만 한편 두 제도의 장점을 채택한 혼합(Hybrid)형이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다만 세법상 적격요건을 따질 경우 어떤 유형의 혼합형이든 DB나

6) 필자가 모두 참여하여 집필한 이순재 외(2005) 및 노동부 보고서(2006)를 참조 및 인용함.

DC형으로 분류된다.

사적 퇴직연금제도는 초기에는 DB형이 많았으나 거시경제지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DC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확정급여형을 채택하는 연금제도의 수는 1975년 10만 여개에서 1982, 3년에 17만 5천여 개로 정점을 보인 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29,700개로 감소하였고,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가입 근로자의 수도 2천 2백만명에서 1천 7백만명으로 감소하였다.⁷⁾ DC형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해왔다. 이미 1975년에 DB형의 두 배 정도의 수효를 보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컨대 이미 1993년에 DC형 제도는 제도 수에서 90%, 가입원수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산 대비 관점에서 볼 때 401(k)플랜의 급성장에 힘입어 DC형 퇴직연금은 1995년 이후 DB형 퇴직연금을 추월하고 있다. 이는 1985년 대비 2002년 현재 연금자산은 DB형 퇴직연금이 199% 증가에 그친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401(K)자산의 증가에 힘입어 481%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2004년 말 현재 401(k) 플랜의 투자자산금액은 약 2.1조 달러였으며, 이는 확정급여형의 1.8조 달러를 초과하는 것이다. 401(k)플랜 가입자 1인당 평균자산 잔고는 9만 1,042달러로서 이는 '99년에 비해 36% 증가한 것이다.

1974년 근로자 퇴직급여 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이하 ERISA)에 의해서 PBGC는 설립되었다. DC형의 경우 정의상 완전 적립되기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라는 것이 없지만, DB형은 사용자가 연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한 연금지급 불능상태를 막기 위해서 사후적 보호 장치로 PBGC

7) 한편 1986년에서 2004년 사이 약 750만 명의 가입자를 갖는 10만1천개의 단일기업주연금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중 약 99,000개의 제도가 연금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자산을 가진 정상폐지("standard termination")였고, 나머지 2,000개의 경우가 PBGC가 처리해야하는 과소적립된 연금제도였다. PBGC, "An Analysis of Frozen Defined Benefit Plans," 2005. 12. 21. p.1.

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해 ERISA 제4장에서 규정한 것이다.

법률상 PBGC가 제공하는 연금보험프로그램은 '제도폐지보험'(plan termination insurance)으로 불리운다. PBGC의 연금보험은 단일기업주 연금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과 복수기업주연금제도(multiemployer pension plan)로 각각 나뉘어 운영된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복수기업주 플랜의 리스크가 특성상 더 낮기 때문에 시초부터 분리 운영되어 왔다.

ERISA가 규정하는 PBGC의 임무(mission)는 첫째, 사적 퇴직연금제도의 성장을 촉진하고,⁸⁾ 둘째, 확정급여연금제도의 연금급부의 적시 지급을 보증하며, 셋째, 보험료 수준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과소적립된 연금제도가 폐지되면, PBGC는 이러한 연금제도의 수탁자(trustee)가 되어, 보장하는 미래 연금 급여의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PBGC의 설립 배경으로 Studebaker 자동차회사가 1954년 파산함에 따라 4천여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던 사실이 항상 거론된다.⁹⁾

Salisbury(1996)는 미국의 경우 이런 커다란 파산 경험으로 인해 그 당시 주종을 이루고 있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가로서 노사 간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험사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모델에 타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¹⁰⁾ 또 ERISA 제정 당시뿐만 아니라 출범 이후에도 연금지급보증에 따른 리스크를 인수하고자 하는 민영 보험사는 그 당시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목적을 수행

8) 다만 Single Employer Pension Plan Amendment Act of 1986)은 PBGC 임무의 범주를 확정급여제도로 축소하였다.(Lockhart III(1993), p.236., "Comments by James B. Lockhart III", The Future of Pensions in the United States edited by Ray Schmitt, Pension Research Council, 1993)

9) Wall Street Journal 2월 8일, 2006)

10) Salisbury, p.313, *Securing Employer-Based Pensions*, 1996, Pension Research Council. edited by Bodie, Mitchell, and Turner.

11) Young, p. 261, "Statement of Howard Young," in *The Economics of Pension Insurance*, 1989, Richard Ippolito. Pension Research Council.

하기 위해 설립된 보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는 리스크에 대한 정보(어떤 요인들이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라든가 과거 폐지(termination)된 연금제도에 대한 통계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범하는 한계를 지녔다.¹²⁾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가 도산하면 PBGC가 해당 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이관 받는 이른바 인수(take-over)방식으로 보장이 이루어진다. PBGC가 자산의 수탁자가 되어 그 플랜에 가입한 근로자 및 퇴직자에게 귀속된 급부를 약속된 방식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회계 상 PBGC의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잡히지만, 운영 비용은 세수(稅收)로 충당되지 않고, 5개 수입원에 의해 자조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다. 5개 수입원은 ① 수입보험료, ② 투자수익, ③ 미적립펀드 플랜 스폰서로부터의 회수금(recoveries from plan sponsors), ④ 재무부 차입, ⑤ 인수(take-over)한 연금제도의 자산을 말하며, 재무부 차입은 현재 없다. 그리고 PBGC가 발행하는 채권은 미국 정부에 의해 완전히 보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사항일 뿐 연방정부기구인 이상 암묵적인 보증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¹³⁾ 이런 맥락에서 PBGC가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는 상호저축은행(S&L)의 많은 파산으로 결국 1989년 없어진 S&L 지급보증기구인 FSLIC(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를 미국 정부가 지원한 것과 동일한 이유라 하겠다. 2005년 PBGC의 제반 운영비용은 3.42억 달러였고, 2006년 미행정부는 의회에 PBGC의 운

12) 그 결과 Ippolito에 의하면 1986년에 이미 출범당시 예측한 비용의 약 50배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혹은 보험료는 연금기금의 적립상태나 스폰서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않았고, 급부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모럴해저드를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였다고 그는 서술하고 있다. (Ippolito(1989) 서문)

13) 이는 2006년 연금법안에 서명할 때의 부시대통령의 연설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연금보험제도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데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President Bush Signs H.R. 4, the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08>.

영비용으로 2.97억 달러를 요청하였다.

2005회계년도 말 현재(즉, 2005년9월30일) PBGC는 30,330개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속한 4,410만명의 가입자(및 퇴직자)를 담보하고 있으며, 약 129만 6천명에 달하는 폐지된 연금제도의 근로자(및 퇴직자)의 미래 퇴직급부를 책임지고 있다. 이 중 단일기업주플랜은 약 28,800개로서 약 3,420만 명의 근로자 및 퇴직자가 가입되어 있고, 복수기업주플랜은 약 1,600여개로서 약 990만명이 속해있다.¹⁴⁾ PBGC는 폐지된 3,595개 연금제도의 약 68만3천여명에 이르는 퇴직자에게 매월 보장한도 내의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지급액은 약 37억달러이다.

2. 보장 내용

가. 적용 대상

연금지급보증제도는 단일기업주제도와 복수기업주제도(multi-employers pension plan)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복수기업주제도는 통상 산업별(예컨대 건설, 소매 식품(retail food), 트럭운송, 광산, 섬유 등) 단체협약에 의해 설립되며, 따라서 연금제도는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사용자에게 의해 지원(sponsor)된다. ERISA가 규정하는 연금보험조항은 단일기업주제도와 복수기업주제도 간에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PBGC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단일기업주제도이므로 이하에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이에 국한해서 논의한다.

보험가입 대상 퇴직연금제도¹⁵⁾는 ERISA 4021(a)에 의해 기본적으로 모든 적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서(일부 예외 존재), 강제보험이다.

14) 2003년말에는 단일기업주플랜이 29,500개로서 3,450만명의 근로자 및 퇴직자가 가입되어 있고, 복수기업주플랜에는 1,600개 플랜에 97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15) 관련 ERISA 조항은 4021(a), 4021(b), 4022(b)(6)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적격 여부는 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IRS)에 의해 결정되며, 일단 IRS가 적격제도로 인정하였다면, 설사 이후에 적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적격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 PBGC 보험제도의 담보 대상 연금제도로 남는다. 단 적격 지위 상실 이후에 발생하는 급부는 담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가입 대상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participant)는 PBGC에 의해 담보되는 개인 피보험자가 된다.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현직 근로자 또는 前 근로자로서, 퇴직연금제도 하에 일정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즉 수급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한편 수익자(beneficiary)는 가입자의 지명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의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담보에서 면책되는 연금제도가 있다. 예컨대 개인구좌제도(money purchase plans, profit-sharing plans, thrift and savings plans, stock bonus plans), 정부 및 교회 연금제도는 제외되는데, 이는 PBGC의 담보 대상이 확정급여형제도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선택된 경영진 및 고액 연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¹⁶⁾, 소규모 병원, 법률사무소처럼 25명 이하의 가입자를 갖는 연금제도, 미국의 법적 관할권 밖에서 설립·운영되는 연금제도 등도 제외 대상이다.

나. 보험사고(insured event)

1) 의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만들어진 이상, 해당 기업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발생급여에 대해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보험사고는 기업이 청산 또는 소멸된 경우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연금제도가 폐지 또는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한 부담금 납입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ERISA

16) 통상 'top hat plans'으로 불리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제정 당시 이런 관점은 입법화 되지 않았다. 대신 사용자가 계속 사업을 지속하고, 심지어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설립하여도 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지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게끔 하였다.¹⁷⁾ 따라서 단일기업주제도의 경우 연금제도의 폐지가 보험사고가 된다.¹⁸⁾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이 있다. 1986년 SEPPAA가 제정되기 이전까지, PBGC에 1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기업주는 얼마든지 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다. 이는 연금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⁹⁾ 왜냐하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게 함으로써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연금제도의 과소적립금액이 기업순자산의 30%를 초과하면 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또한 미래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를 폐지할 수 있으므로 굳이 기업이 세계 상 허용된 최대 수준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게끔 하게 하였다. 실제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연금제도를 폐지하였고, 이는 결국 PBGC의 적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이렇게 제도를 폐지한 일부 기업은 심지어 금방 다른 연금제도를 설립하거나 이익공유제도(profit-sharing plan)를 시행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런 유형의 모럴해저드를 통제하기 위해 SEPPAA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업이 과소적립된 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강화

17) McGill et al.(1989), p.584.

18) 반면 복수기업주제도의 경우에는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연금제도가 보장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때이다. 즉 이때 PBGC가 보장하는 급여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단일기업주제도와 달리 PBGC는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맡지 않는다. 대신 파산한 연금제도에 대출을 주선하여 급여를 지급케한다. 2005년에 PBGC는 29개의 파산한 복수기업주제도에 1,380만 달러를 대출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대출은 통상 상환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출은 일단 시작하면 연금제도가 모든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계속된다. 30년간 연금제도에 소속해 있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대보장한도액은 12,870 달러이다.

19) McGill et al(2005), p.806-807 및 Allen et al(2003) p.286 참조.

하였다. 즉, 연금제도의 폐지가 여전히 보험사고로 성립하지만, 과소적립된 연금제도의 경우 해당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아닌 한 과거와 같이 자유로이 폐지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기업 청산(소멸)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에 보다 근접한 것이다. 또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에 처해 있지 않은 기업이 과소적립된 연금제도를 폐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일단 제도를 중단(freeze)하고 부담금을 계속 부담하여 모든 발생 급부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적립이 이루어진 연후에야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 또 1987년의 통합예산균형법(OBRA)은 기업의 PBGC에 대한 순자산 30% 한도 조항을 없앴으로써 PBGC에 연금제도 부채를 이전코자 하는 기업의 악용 동기를 더욱 제한하였다.

2) 폐지의 종류

연금제도의 폐지는 사용자가 도산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PBGC가 판단할 때 재정 상태가 부실할 경우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연금제도가 폐지될 경우, 급부의 발생(accrual), 수급권의 진행 등 모든 진행이 정지된다.

가) 자발적 폐지

단일기업주 제도의 자발적 폐지(voluntary termination)는 정상폐지와 부실폐지의 두 종류로 나뉘어 진다.²⁰⁾

(1) 정상 폐지(standard termination)

정상 폐지란 연금제도가 폐지되기 이전 모든 급부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재정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ERISA 지침 상 근로자가 보장된 급부를 일시금이나 보험사의 연금으로 수령 받으면 PBGC의 보장책무는 끝난다. 1974년 설립 이후 약 16만 3천개의 연금제도가 이 방식으로 폐지

20) www.pbgc.gov. 참조.

되었다. 「퇴직연금규약」상 허용된 경우, 모든 연금부채를 충당하고 남은 자산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2) 부실 폐지(distress termination)

부실 폐지란 연금제도가 모든 급여를 지급하기 불충분한 재정 상태인 경우로서, 기업주는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경우 기업이 파산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PBGC는 발생한 급여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한편 기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자금을 구상 받기 위해 노력한다.

부실로 인한 연금제도 폐지 신청을 위해 사용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퇴직연금사업자(plan administrator)가 예정된 제도 폐지 일자로부터 늦어도 60일 이전(90일 이상 초과 금지) 연금제도 폐지에 관해 PBGC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둘째, 통보 이후 곧 연금사업자는 연금제도의 자산 및 부채, 가입자에 관한 현황 데이터를 포함하는 폐지 신청서를 PBGC에 제출한다.

셋째, PBGC는 사용자(및 관련 자회사)가 적어도 다음의 재무부실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킨다고 인정해야 한다; ①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② 파산 갱생을 신청하고, 파산법원이 연금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갱생이 어렵다 하여 폐지를 인정한 경우, ③ 사용자가 제도 폐지가 되지 않으면 사업 지속이 불가능함을 증명한 경우, ④ 근로자의 인원 감소로 인해 연금제도 유지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나) 비자발적 폐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폐지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이와 상관없이 PBGC가 강제적으로 기금을 폐지시키는 경우(involuntary termination)를 말한다. PBGC는 연금제도 자산이 현재 지불해야 하는 급여에 부족할 경우 연금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경우 PBGC의 판단으로 제도를 종료시킬 수 있다.

- ① 최소적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② 제 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 ③ 기업의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는 제도 가입자에게 일시불 급여가 지급된 경우
- ④ 만약 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PBGC에 상당한 손실을 끼칠 것이 예상될 경우

요컨대 자발성 여부에 상관없이 적립 부족 상태인 기금이 폐지되는 것은 사용자의 도산 또는 그와 유사한 사정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설립 이후 31년간 부실 또는 비자발적 폐지가 이루어진 연금 제도는 3,595개였으며, 관련된 현직 근로자 및 퇴직자수는 약 119만 3천 명에 달한다.²¹⁾

연금제도의 폐지는 제도 가입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다. 베들레헴 철강의 예를 들면 폐지 시 동사 연금제도의 부채는 80억 달러였지만 자산은 약 35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PBGC는 보장한도 내에서 지급하므로, PBGC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연금제도가 약속한 것보다 5억 달러가 적은 금액이었으며, 일부 가입자들은 약속된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되었다.²²⁾

다. 보험금

1) 보장 급여 범위와 조건

PBGC에 의해 퇴직연금 급여가 보장되어도 가입자의 모든 발생급부가 연금제도 폐지 이후에 전부 지급된다는 것은 아니다. PBGC가 보장하는 유형의 급여는 제도 폐지 이전 수급권을 갖게 된 “기초 급여”(basic benefits)이다. 기초 급여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즉 ① 정

21) 한편 복수기업주제도의 경우, 기업이 파산할 경우가 아니라 연금지급을 위한 자산을 더 이상 연금기금이 갖고 있지 않은 경우 PBGC가 개입한다. 복수기업주제도 하의 최대보장금액은 연 \$13,000이며, PBGC는 통상 대출의 형태로 재정지원을 하며, 10만 3천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22) White Paper of PBGC(April 6,200p2, www.dol.gov/ebsa/pdf/PBGCWP040605.pdf)

상퇴직연령에서의 연금 급여(pension benefits), ② 대부분의 조기 퇴직 급여, ③ 가입자 유족에 대한 연금 급여(annuity benefits) 및 ④ 연금제도 폐지 이전 발생한 장애에 대한 장애 급여를 말한다.

PBGC는 건강급여, 휴가수당(vocation pay), 퇴직위로금(severance benefits), 제도 폐지일 이후 발생한 사망에 대한 사망일시금, 제도 폐지일 이후 발생한 장애에 대한 장애급여를 보장하지 않는다.

<표 IV-1> PBGC 연금 급여 수급자 및 이연수급자 (1980-2005)
(단일사업주 제도)

회계 년도	연금 급여			일시불 급여			총 지급액		이연 수급자 (천명)
	총합 (백만 달러)	수급자 (천명)	평균 월급여 (\$)	총합 (백만 달러)	수급자 (천명)	평균 급여 (\$)	총합 (백만 달러)	수급자 (천명)	
1980	34	28	124	3	2	1,623	37	30	25
1985	166	75	226	4	2	1,782	170	77	92
1990	356	110	262	13	6	2,437	369	116	85
1991	499	140	338	15	6	2,558	514	146	171
1992	617	150	359	17	6	3,078	634	156	170
1993	704	157	379	16	5	2,686	720	162	162
1994	699	170	359	20	7	2,818	719	176	163
1995	739	182	344	22	6	3,335	761	187	163
1996	770	199	328	20	7	2,757	790	206	182
1997	800	204	316	23	9	2,629	823	213	202
1998	826	208	313	21	9	2,198	847	216	213
1999	844	214	311	56	16	3,553	901	229	225
2000	831	226	309	71	19	3,726	902	243	226
2001	954	266	325	88	18	4,817	1,042	283	246
2002	1,459	343	383	79	21	3,757	1,537	362	326
2003	2,401	457	453	87	22	4,220	2,488	477	375
2004	2,918	517	475	88	21	4,229	3,006	533	424
2005	3,607	683	487	78	17	4,633	3,685	698	489

자료: Pension Insurance Data Book, 2005

<표 IV-2> 제도 종료 년도의 PBGC 급여 수급자 및 급여액(2005년 기준)
(단일사업주 제도)

제도 종료 발생 회계연도	2005년 수급자수		2005년 급여 지급액 (백만달러)		평균 월연금 급여(\$)	미디안 월연금 급여(\$)	2005년 이연 수급자
1980년 이전 제도 종료	9,336	1.3%	13.8	0.4%	114	88	1,648
1980-1984	31,913	4.6%	86.6	2.4%	216	167	4,797
1985-1989	45,686	6.5%	169.7	4.6%	297	209	11,805
1990	5,842	0.8%	17.6	0.5%	238	168	3,272
1991	51,059	7.3%	270.8	7.3%	419	314	25,065
1992	15,416	2.2%	63.2	1.7%	325	211	6,963
1993	5,647	0.8%	17.5	0.5%	246	170	4,535
1994	12,312	1.8%	52.4	1.4%	338	232	5,784
1995	7,520	1.1%	29.4	0.8%	313	155	6,022
1996	10,381	1.5%	30.0	0.8%	226	114	7,049
1997	13,243	1.9%	47.4	1.3%	286	205	10,555
1998	4,766	0.7%	15.4	0.4%	266	152	5,504
1999	6,738	1.0%	19.8	0.5%	234	151	17,098
2000	12,128	1.7%	30.5	0.8%	211	110	5,630
2001	48,778	7.0%	313.1	8.5%	525	342	37,077
2002	107,126	15.4%	704.3	19.1%	536	407	68,758
2003	105,458	15.1%	978.4	26.6%	754	548	72,692
2004	56,844	8.1%	327.4	8.9%	541	277	95,994
2005	147,438	21.1%	497.7	13.5%	751	493	98,598
총합	697,631	100.0%	3,684.9	100.0%	487	286	488,846

자료 : Pension Insurance Data Book(2005)

2) 지급금액과 금액 제한

PBGC가 매월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은 법에 의해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는 사회보장연금 급여과세기준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인상)된다. 그러나 일단 지급받는 금액이 결정되면 이는 사망 시까지 변치 않는다. 즉,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재조정하는 COLA (cost-of-living adjustment)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래 최초 월 한도액은 750 달러였지만 이 금액은 꾸준히 증가되어와 2006년에 폐지된 연금제도의 경우, 65세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월 최대 \$3,971.59(연 \$47,659.08)까지 지급이 된다.²³⁾ 이는 단생 종신연금 기준 (straight-life annuity with no survivor benefits)이므로, 65세부터 연금을 매달 지급받기로 할 경우 생존한 동안 월 \$3,971.59만큼을 최대 지급받게 된다. 연금 수급 연령이 낮아지면 여명기간이 증가하므로 연금 지급 금액은 감소하게 된다. 6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월 급여액은 증가하지만 보험수리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한편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보장액은 가장 소득이 높은 5년 간의 평균 월정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급여의 최대 월지급액은 \$3,971.59(연 \$47,659.08)이며, 65세 이전 지급받을지라도 감액되지 않는다. 이는 연금제도 폐지(중단) 이전 장애급여에 대한 연금제도협약 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또 해당 장애에 대해 사회보장장애급여 혜택을 받게 될 때 적용된다. 유족급여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PBGC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만, 금액은 감액된다. 기혼자인 가입자가 급여지급방식을 선택치 않고 사망하는 경우 PBGC는 생존 배우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PBGC는 기본적으로 보장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그러나 급여 총액이 \$5,000 이하이면, 일시금으로 지급

23) 55세부터 퇴직급여를 받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1,787.22(연간 \$21,446.64)가 지급된다. 한편 2005년에는 65세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월 최대 \$3,801.14(연 \$45,613.68)까지 지급이 되었다.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은 IRA에 입금할 수 있다. 지급 연금 형태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① 종신연금(가입자 사망 후 유족급여 없음)
- ② 확정기간부 종신연금(5년, 10년, 15년 확정기간)
- ③ 연생유족연금(사후에도 유족에게 연금지급되며, 유족이 받는 금액은 선택에 따라 50, 75, 100%가 될 수 있음)
- ④ 가입자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자동 급여 형태(“automatic” form of benefit)

모럴해저드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제도 폐지 시 퇴직연금제도 협약 하에 5년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것에 대해 PBGC 보험은 적용된다. 만약 제도가 폐지(중단)되기 이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도의 개정이나 신규 채택된 제도에 의해 급부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PBGC의 보장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한다.

- ① 경과년도 × 년 20% × 제도 개정이나 신규 제도로 인한 급부 부가액,
- ② 월 20 달러 × 경과년도

또한 연금제도가 일시 급여(temporary payment)와 같은 추가 급부(supplemental benefits)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PBGC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PBGC는 정상퇴직연령에 퇴직할 경우 제도협약 상 규정된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장하지 않는다. PBGC는 일반적으로 \$5,000가 넘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표 IV-3> PBGC의 월 최대보장액 변동 추이

(단위 : \$)

연금제도 폐지년도	65세 퇴직 월 보장한도	62세 퇴직 월 보장한도	60세 퇴직 월 보장한도	55세 퇴직 월 보장한도
2006	3,971.59	3,137.56	2,581.53	1,787.22
2004	3,698.86	2,922.10	2,404.26	1,664.49
1994	2,556.82	2,019.89	1,661.93	1,150.57
1984	1,602.27	1,265.79	1,041.48	721.02
1974	750.00	592.50	487.50	337.50

주 : 단생 종신연금 기준

<표 IV-4> PBGC의 월 최대 보장급여(2006년 폐지 연금제도의 경우)

(단위 : \$)

Age	2006 단생 종신연금	2006 연생 50% 유족연금*
65	3,971.59	3,574.43
64	3,693.58	3,324.22
63	3,415.57	3,074.01
62	3,137.56	2,823.80
61	2,859.54	2,573.59
60	2,581.53	2,323.38
59	2,422.67	2,180.40
58	2,263.81	2,037.43
57	2,104.94	1,894.45
56	1,946.08	1,751.47
55	1,787.22	1,608.50
54	1,707.78	1,537.00
53	1,628.35	1,465.52
52	1,548.92	1,394.03
51	1,469.49	1,322.54
50	1,390.06	1,251.05
49	1,310.62	1,179.56
48	1,231.19	1,108.07
47	1,151.76	1,036.58
46	1,072.33	965.10
45	992.90	893.61

주 : * 가입자와 유족의 연령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지급액임.

3. 요율 체계

가. 보험료의 구성과 변천

PBGC의 보험료는 최초 설립 시 가입자 1인당 1달러의 고정요율제였다. Ippolito(1989)에 의하면 요율이 최초에 1달러로 책정된 것은, 연간 1만명의 가입자 당 1명의 가입자만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연금제도의 폐지가 적게 일어났다는 미 행정부의 1972년 조사에 근거한다(p.3). 1986년 시점 평가한 클레임은 최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험료 추정치는 1974년 출범 시 책정 수준보다도 25~50배에 달했다.(p.11) 결과적으로 볼 때, PBGC는 상당히 불충분한 정보와 보험원리가 결여된 구조로 출범을 한 것이다.

출범 때와 달리 보험료는 현재 고정보험료와 변동보험료(variable rate premium)로 구성된다. 고정보험료는 설립 이후 계속 인상되어 왔으며, 2005년 말까지 가입자 1인당 연간 \$19였다. 변동보험료는 개별 퇴직연금제도의 과소적립액 즉 미적립연금부채(unfunded vested benefits)를 계산하여 \$1,000당 연간 \$9를 적용하였다. 미적립연금부채(연금제도부채가치²⁴⁾ - 연금제도자산가치)는 ERISA에서 규정한 보험수리가정과 방식(method)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변동보험료의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적용이자율은 전통적으로 30년 만기 미채무성채권 연수익률의 85%였다.²⁵⁾ 미적립연금부채는 등록된 계리사(enrolled actuary)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보험수리 원칙 및 실무(generally accepted actuarial principles and practices)에 의거

24) 연금제도부채의 산정은 발생급부(vested benefit)와 이자율(미국 30년만기 채무성채권 수익률에 일정 비율(2006년부터는 85%) 적용하여 산출된 이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예컨대 2006년 1월에는 3.95%가 적용되었다.

25) 2006년 1월 적용이자율은 4.86%임.

하여 산정되었다는 확인(certify)을 받아야 한다. 변동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리사에 의해 미적립연금부채가 없다고 확인된 연금제도, 가입자 수가 500인 미만인 연금제도, 정상 폐지된 제도 등이다.²⁶⁾

<표 IV-5> PBGC 보험료 부과 방식 및 수준 추이

년도	고정보험료 (가입자 1인당 \$)	변동보험료 (미적립부채 \$1,000당)	비고
1974~77	1	-	
1978~85	2.60	-	
1986~87	8.50	-	
1988~90	16	6	가입자당 최대 \$34
1991~94.6.30	19	9	가입자당 최대 \$53
1994.7.1~95.6.30	19	9	가입자당 최대 \$53 및 20% 초과분 한도
1995.7.1~96.6.30	19	9	가입자당 최대 \$53 및 60% 초과분 한도
1996.7.1~2005	19	9	최대한도 완전 폐지
2006~	30	9	고정보험료 평균임금지수 연동(임금지수 하락할 경우 보험료 불변)
2006~2010말			이 기간 내 폐지되는 연금제도는 3년간 가입자당 \$1,250 부과

주 : 복수기업주의 경우 가입자당 \$2.60에서 \$8.00으로 2006년부터 인상
자료 : PBGC, Pension Insurance Data Book 2005

26) 적립률이 적어도 90% 이상이면 일정 경우 변동보험료가 적용이 안되기도 한다.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였고, 1991년부터 변동보험료의 최대한도는 폐지되었으나 가입자 1인당 보험료인 \$19는 2006년 연금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지속되어 왔다. 복수기업주 제도에 대한 보험료는 가입자 1인당 \$2.60였고, 변동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고정보험료의 인상배경에는 1980년대 중반에 연이은 기금 파탄에 의한 PBGC재정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으며, 변동보험료의 도입은 단순히 보험료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적립 부족 연금제도에 의한 모럴 해저드(적립수준이 충분한 기금에 편승하는 현상)의 방지 및 적립 부족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단일기업주제도의 수입보험료는 2004년 14억 5,800만 달러에서 2005년 14억 5,100만 달러로 약간 감소하였다. 변동보험료가 고정보험료 규모를 초과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다. 2005년의 경우 고정보험료 수입은 6억 6,400만 달러(당년도 총보험료의 45.8%)였고, 변동보험료는 7억 8,700만 달러(54.2%)였다. 변동보험료는 일정 최소적립요건을 갖춘 경우 면제되는데, 2004년도 보다 더 많은 연금제도가 면제 처분을 받았다.²⁷⁾

27) PBGC 2005년 연간 보고서

<표 IV-6> PBGC 수입보험료 변천 및 내역
(1980-2005, 단일기업주제도)

(단위 : 백만달러)

년도	고정보험료		변동보험료		총수입보험료
	액	비율	액	비율	
1980	71.2	100.0%	-	-	71.2
1985	81.7	100.0%	-	-	81.7
1990	509.0	77.2%	150.0	22.8%	659.0
1991	541.0	73.0%	200.0	27.0%	741.0
1992	590.0	67.4%	285.0	32.6%	875.0
1993	605.0	68.0%	285.0	32.0%	890.0
1994	648.0	67.9%	307.0	32.1%	955.0
1995	587.0	70.0%	251.0	30.0%	838.0
1996	600.0	52.4%	546.0	47.6%	1,146.0
1997	646.0	60.5%	421.0	39.5%	1,067.0
1998	642.0	66.5%	324.0	33.5%	966.0
1999	611.0	67.7%	291.0	32.3%	902.0
2000	661.0	81.9%	146.0	18.1%	807.0
2001	674.0	82.1%	147.0	17.9%	821.0
2002	654.0	83.1%	133.0	16.9%	787.0
2003	647.0	68.2%	301.0	31.8%	948.0
2004	654.0	44.9%	804.0	55.1%	1,458.0
2005	664.0	45.8%	787.0	54.2%	1,451.0

자료 : PBGC, Pension Insurance Data Book 2005

한편 변동보험료 산출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1992년 6.16%에서 2004년 4.94%로 출렁이는 추이를 보여 왔다.

<표 IV-7> PBGC 고정보험료 대 변동보험료 지급 추이
(1992-2004, 단일기업주제도)

(단위 : %)

년도	변동보험료 지급 제도 비중	고정보험료만 지급하는 연금제도비중	변동보험료 지급 연금제도 가입자 비중	고정보험료만 지급하는 연금제도 가입자 비중	변동보험료 적용 이자율
1992	30.8	69.2	27.4	72.6	6.16
1993	36.4	63.6	24.9	75.1	5.95
1994	43.1	56.9	34.2	65.8	5.00
1995	38.5	61.5	23.8	76.2	6.30
1996	46.8	53.2	32.1	67.9	4.85
1997	37.0	63.0	19.4	80.6	5.24
1998	35.6	64.4	16.6	83.4	5.09
1999	35.1	64.9	13.2	86.8	4.30
2000	28.0	72.0	7.4	92.6	5.40
2001	33.5	66.5	8.0	92.0	4.67
2002	35.7	64.3	9.8	90.2	5.48
2003	45.1	54.9	17.2	82.8	4.92
2004	50.0	50.0	33.1	66.9	4.94

2004년도의 경우, 변동보험료를 지급하는 연금제도는 15,086개였고, 반면 지급하지 않는 연금제도는 15,062개였다. 변동보험료를 지급하는 연금제도 가입자의 수는 1,100만명인 반면 고정보험료만 지급하는 연금제도 가입자의 수는 2,300만명이었다.

<표 IV-8> PBGC 고정보험료와 변동보험료 지급 분포
(2004년, 단일기업주제도)

가입자당 총보험료(\$)	연금 제도수	변동보험료 지급 연금제도 비중	총연금 제도 대비 비중	가입자수 (단위: 백만명)	변동보험료 지급 연금제도의 가입자 비중	총 가입자 대비 비중
19 (변동보험료 지급하지 않음)	15,062	-	50.0%	23	-	66.9%
변동보험료 지급제도	15,086	100.0%	50.0%	11	100.0%	33.1%
19.01 - 28.99	825	5.5%	2.7%	0.6	5.3%	1.8%
29.00 - 38.99	976	6.5%	3.2%	0.7	6.3%	2.1%
39.00 - 48.99	1,122	7.4%	3.7%	1	8.9%	3.0%
49.00 - 58.99	1,098	7.3%	3.6%	1	8.8%	2.9%
59.00 - 68.99	1,047	6.9%	3.5%	1	10.4%	3.4%
69.00 - 78.99	963	6.4%	3.2%	0.8	7.6%	2.5%
79.00 - 88.99	911	6.0%	3.0%	0.9	8.2%	2.7%
89.00 - 98.99	817	5.4%	2.7%	0.7	6.9%	2.3%
99.00 - 108.99	661	4.4%	2.2%	0.5	5.1%	1.7%
109.00 - 118.99	587	3.9%	1.9%	0.5	5.1%	1.7%
119.00 - 168.99	1,951	12.9%	6.5%	2	13.7%	4.5%
169.00 - 218.99	1,087	7.2%	3.6%	0.5	4.9%	1.6%
219.00 - 268.99	648	4.3%	2.1%	0.6	5.5%	1.8%
269.00 - 318.99	429	2.8%	1.4%	0.1	1.4%	0.5%
319 이상	1,964	13.0%	6.5%	0.2	1.8%	0.6%
총연금제도 수	30,148	-	100.0%	35	-	100.0%

PBGC의 수입보험료 분포를 '가입자 수' 별로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가입자 수 백명 미만의 연금제도로부터 거수되는 총보험료는 2004년의 경우 약 3,200만달러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2.2%에 불과하였다. 고정보험료는 8백만 달러로서 총고정보험료의 1.2%를 차지하였고, 변동보험료는 2,400만 달러로서 총변동보험료의 3.0%를 차지하였다.

가입자 규모가 1만명 이상인 연금제도로부터 거수되는 보험료는 약 8억6천만달러로 2004년 전체 수입보험료 14억 5,800만 달러의 58.7%를 점유하였다. 고정보험료는 4억 2,400만 달러로써 총고정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였고, 변동보험료는 4억 3,100만 달러로서 총변동보험료의 약 54%를 보였다.

<표 IV-9> 퇴직연금제도 규모 별 PBGC 수입보험료 분포
(2004년, 단일기업주제도)

(단위 : 백만달러)

가입자 수	고정보험료		변동보험료		총수입보험료	
100인 미만	8	1.2%	24	3.0%	32	2.2%
100 - 499	26	4.0%	53	6.6%	79	5.4%
500 - 999	23	3.6%	45	5.5%	68	4.7%
1,000 - 2,499	50	7.6%	84	10.5%	134	9.2%
2,500 - 4,999	53	8.2%	71	8.9%	125	8.6%
5,000 - 9,999	70	10.7%	96	11.9%	166	11.4%
10,000인 이상	424	64.8%	431	53.6%	855	58.7%
총 계	654	100.0%	804	100.0%	1,458	100.0%
비 중	45%		55%		100%	

자료 : PBGC, Pension Insurance Data Book 2005

나. 문제점

보험료의 산정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거론되어 왔다. 첫째, PBGC가 책정하는 보험료가 의회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리스크에 합당한 수준의 보험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당한 보험료 수준으로 결정되는 문제를 갖는다. 보험료는 민간보험처럼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으며, PBGC가 노출되어 있는 사용자의 파산리스크, 연금기금의 투자리스크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 파산확률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기에 파산가능성이 기업이 불건전한 기업을 보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편 사용자는 재무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PBGC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유형의 전략적 행태를 취할 수 있다. 즉, 분담금을 적게 내고자 하거나, 보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거나, 연금급여를 인상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그나마 낮게 책정된 보험료도 제대로 완전하게 징수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거 PBGC는 과소적립액 \$1,000에 대해 9달러에 해당하는 변동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2년 과소적립규모를 약 \$4,000억으로 추산하므로 \$36억의 보험료가 납부되었어야 했지만, 현실은 단지 \$7억 8,700만을 징수했고, 이중 \$5억 8,600만은 일인당 \$19인 고정요율에 의거한 보험료였고, 나머지 \$2억이 과소적립수준에 의거한 변동보험료 분이다. 따라서 실제 거두어들인 변동보험료는 \$1,000에 대해 \$9가 아니고 5.5%에 불과한 \$0.5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²⁸⁾

28) Ippolito(2004) p.13. "Is Pension Insurance the Next S&L Crisis?" CATO Institute, Sept. 29, 2004.

다. 현행 요율 책정 방식

2006년 연금보호법에 의하면, PBGC의 보험료는 완전 적립된 연금제도의 경우 확정보험료를 현재 단일기업주 제도의 경우 2006년도부터 가입자 1인당 \$19에서 \$30, 복수기업주의 경우 현행 \$2.60에서 \$8로 인상되며, 2006년 이후 이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의 급여 기준(wage base) 인상률에 연동되어 증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에서 PBGC에 지급하는 보험료(V_i)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²⁹⁾ 여기서 U_i 는 과소적립액을 F_i 는 가입자 1인당 고정보험료(현행 \$30)를 뜻한다.

$$V_i = 0.009U_i + F_i$$

과소적립된 연금제도로써 신용등급이 2년간 투자적격등급에 못 미치는 경우 리스크에 상응하는 높은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최종 법안 조율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또 PBGC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폐지된 연금제도와 파산 과정 상 폐지된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신규로 인당 수수료를 징구하게 되어있다. 즉 3년간 보험료는 가입자 일인당 \$1,250이며, 이 조항은 2005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2011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제도 폐지에 적용된다. 또 2005년 10월 18일 이후 발생한 파산에 대해 적용된다. 즉, 고정보험료율이 대폭 인상되고, 요율 조정의 경직성이 완화되었으며, 제도 적립률 제고 동기를 강화한 것이다

4. 재정 현황

가. 재무구조와 주요 지표

1) 재무구조

2005회계년도말 단일기업주제도와 복수기업주제도를 결합한 통합자본은 231억 달러의 자본 잠식을 보였다(표IV-10참조). 2004년(\$235억 자

29) Boyce and Ippolito(2002), p.141.

본 잠식)에 비해 약 \$4억 개선되었는데, 주요 이유로는 예정이자율 인상³⁰⁾으로 인한 부채의 감소와 투자수익률³¹⁾의 개선이 거론된다.

<표 IV-11>에서 보듯 2000년까지 약 \$100억 규모로 증가했던 자본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2년부터 완전 잠식된 추이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는 철강, 항공산업 등에 속한 대형사의 파산에 특히 영향을 받은 것이다.³²⁾ 이에 따라 PBGC가 책임져야 하는 가입자의 수는 13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PBGC의 자산규모는 56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표 IV-10> PBGC의 2005 회계년도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 달러)

단일기업주제도(single-employer program)			
자산	56,490 (38,993)	부채	79,246 (62,298)
		자본	-22,776(-23,305)
복수기업주제도(multiemployer program)			
자산	1,160 (1,070)	부채	1,495 (1,306)
		자본	-335 (-236)

주 : ()는 2004년 실적임.

<표 IV-11> PBGC의 자본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단일 기업주	-22,776	-23,305	-11,238	-3,638	7,732	9,704	7,038	5,012	3,481	869
복수 기업주	-335	-236	-261	158	116	267	199	341	219	124
총합	-23,111	-23,541	-11,499	-3,480	7,848	9,971	7,237	5,353	3,700	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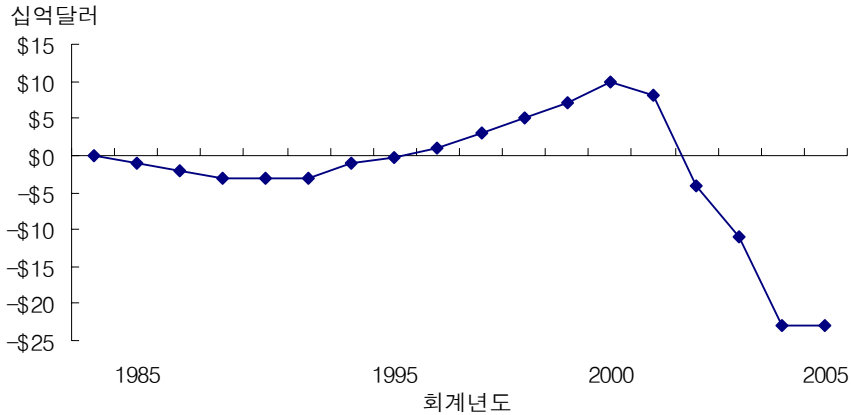
자료 : PBGC

30) PBGC가 서베이를 통해 확정하여 사용하는 이자율("select interest factor")은 2004년 9월말 4.8%에서 2005년 9월말 5.2%로 증가하였다.

31) 예컨대 단일기업주제도의 투자수익률은 2004년 8.0%에서 2005년 8.9%로 증가하였다.

32) 예컨대 LTV steel, Bethlehem steel, US Airways, United Airline, Polaroid, Kemper Insurance를 들 수 있다. 특히 United Airlines은 PBGC 창립 이래 최대 금액인 1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림 IV-1> PBGC 단일사업주 제도의 순자산 추이



자료 : Pension Insurance Data Book(2005)

2) 주요 지표

손익지표를 보면 2005년 통합 순이익은 약 \$5억이었다. 이는 통합 수입보험료 \$15억,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 재평가로 \$29억 개선, 순투자수익 \$8억을 합한 수치에서 신규 예상 폐지에 대한 \$47억 비용요인을 차감한 후 금액이 된다. 특히 2004년도 단일기업주연금제도의 적자는 약 \$120억을 보였는데, 이는 예상 폐지를 포함한 발생손실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5 회계연도 중 PBGC는 120개의 연금제도(단일기업주)를 폐지하여, 창립 이후 폐지된 제도는 총 3,595개가 된다. 폐지된 120개의 연금제도 자산은 총 \$105억(예상 구상액 포함), 미래 지급하여야 할 연금부채는 \$212억이 되어 PBGC의 손실은 \$107억으로 집계되었다. 폐지 제도들의 평균 적립률(연금자산/연금부채)은 약 50%였다. 이에 따라 지급한 급여액은 약 \$37억이었다.

<표 IV-12> PBGC의 주요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명, 개)

구분	2005	2004
수입보험료	1,477	1,485
투자수익	3,976	3,251
제도폐지로 인한 손실	3,954	14,707
순손익(단일기업주제도)	529	-12,067
순손익(복수기업주제도)	-99	25
지급급여(즉, 지급보험금)	3,686	3,007
퇴직자수	682,820	518,220
총급여수급가입자수	1,296,000	1,061,000
신규폐지제도수(과소적립사유)	120	192
폐지제도수	3,595	3,479

PBGC의 영업 실적은 변동성이 크다. 즉, 제도 폐지로 인한 손실의 심도, 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의 변동, 투자수익률, 일반 경제 상황, 법률의 변화와 같은 요인들이다. 즉, 허리케인이나 화재 등과 같이 일반 보험사가 담보하는 손인(peril)과 시장리스크(market risk)와는 비교적 독립적이지만 PBGC의 경우에는 시장리스크와의 연관성이 적지 않다. 즉, PBGC는 시장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갖는다.

<표 IV-13> PBGC 클레임 규모 연도별 추이 (1975 - 2005)

(단일사업주 제도)

(단위 : 백만 달러)

회계년도	클레임 규모		합계	
	\$100-\$999백만	\$십억 이상		
1975 - 1979	-	-	252	0.8%
1980 - 1984	-	-	744	2.3%
1985 - 1989	983	-	1,700	5.4%
1990 - 1994	1,820	-	2,842	9.0%
1995 - 1999	-	-	783	2.5%
2000 - 2005	9,031	12,320	25,388	80.1%
총합	11,834	12,320	31,709	100.0%
퍼센트 비중	37.3%	38.9%	100.0%	

자료 : Pension Insurance Data Book(2005)

시장리스크가 PBGC에 주는 영향은 US Airways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동사는 2003년 PBGC의 클레임이 되었는데, 2000년 12월 말 동사 연금제도의 적립률은 104%였다. 그러나 2년 후 PBGC가 연금제도의 수탁자가 될 무렵 적립률은 50%로 급감하였다. 주된 이유는 IT 거품이 꺼지면서 주식시장이 2001년부터 침체하기 시작하면서 US 항공의 연기금의 보유 주식 가치가 급감한데 기인한다(Ippolito(2004), p.9)³³⁾.

33) 2000년도 말부터 2002년도 말까지 미국 주식 시장의 수익률은 거의 40% 하락하였다(S&P 기준).

한편 일반 손해보험사는 언더라이팅을 통해 리스크를 선택하면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점에 관한한 PBGC는 일종의 의무 보험이므로 언더라이팅을 통한 관리가 불가능하다. 즉, 리스크가 높음에도 인수해야 하고, 또 지역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거나 업종 별로 분산하는 것과 같은 다변화가 가능하지 않다.

현재 PBGC는 항공, 철강, 자동차와 같은 특정 업종에 리스크가 집중되어 있다. PBGC의 리스크 풀(pool)은 글로벌경쟁과 굴뚝산업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변화로 영향을 받는 산업(철강, 자동차, 항공산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1975년에서 2002년까지의 클레임 지급 금액 비중을 보면 철강산업이 56%(94억 달러)를 차지하고, 항공산업은 17%(28억 달러), 기타는 28%(47억 달러)를 차지한 바 있고, 물론 이제는 US 항공과 United 항공 등의 파산으로 항공산업의 비중이 1위를 점유하게 되었다.³⁴⁾ 반면 철강산업에 전체 가입자의 3% 미만이 가입되어 있으며, 항공산업은 2%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1년 가입대상의 거의 반수가 제조업체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 업체의 상당수가 노조가 강하고 고정요율제도로 운영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업들은 계약상 정기적으로 소급해서 인플레이를 보전하고 급부 인상을 위한 일정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PBGC를 특히 위협스럽게 만들었다. 연금인상 약속은 사전에 세제상의 한계로 사전에 적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연금제도하에서 과소적립 상황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종종 크게 발생했다.

34) 2002년 PBGC는 베들레헴철강회사로 인한 클레임 금액으로 36억 달러를 시현하였고, 가입자가 95,000명에 이르는 연금제도를 인수하여야만 했다. 또 유나이티드 항공은 창립 이래 최대 금액인 120억 달러가 소요되어, 베들레헴철강의 기록을 갱신하였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PBGC에 끼친 손실은 약 66억 달러이다.

<표 IV-14> 10대 대형 단일기업주제도 클레임 현황 (1975-2005)

10대 회사명	연금 제도수	제도 폐지 년도	클레임규모 (기업별, 백만달러)	가입자수	가입자당 평균 클레임	총클레임 대비 비중 (1975-2005)
1. United Airlines	4	2005	7,094	122,541	57,889	22.7%
2. Bethlehem Steel	1	2003	3,654	97,015	37,668	11.5%
3. US Airways	4	2003, 2005	2,862	58,823	48,653	9.0%
4. LTV Steel	6	2002, 2003, 2004	1,960	80,961	24,205	6.2%
5. National Steel	7	2003	1,161	35,404	32,793	3.7%
6. Pan American Air	3	1991, 1992	841	37,485	22,438	2.7%
7. Weirton Steel	1	2004	690	9,196	75,052	2.2%
8. Trans World Airlines	2	2001	668	34,257	19,511	2.1%
9. Kemper Insurance	2	2005	566	12,221	46,324	1.8%
10. Kaiser Aluminum	3	2004	566	17,591	32,165	1.8%
10대사 관련 연금제도 클레임 총합	33		20,062	505,494	39,689	63.3%
기타 기업 클레임 총합	3,552		11,646	1,178,762	9,880	36.7%
총계	3,585		31,709	1,684,256	18,826	100.0%

보험료를 설정도 일반 보험사는 실적을 포함한 다양한 요율산정요인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요율을 차별화하지만, PBGC는 법률의 개정 에 의해서만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어, 매우 경직적인 요율체계를 갖는다. 요율산정변수도 오직 과소적립(underfunding) 수준에 의해서만 요율차별화가 가능할 따름이다. 2005회계년도말 현재 PBGC가 추정하는

모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과소적립액은 제도폐지기준(termination basis)으로 4천5백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2004년도말에 추정한 것과 차이가 없는 수치이지만 달라진 점은 대형 연금제도가 보다 과소적립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³⁵⁾

3) 적자 내역

적자 규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발생손해액(incurred losses)이며, 다음 식에 의해 산출된다.

$$\text{발생 손해액} = \text{폐지된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 \text{폐지가 "예상"되는 연금 제도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손실}$$

위의 식에서 후자는 일반 보험경영에서의 지급준비금(loss reserve)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적자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상 폐지(probable termination)'이다. '예상 폐지'란 PBGC가 판단하기에 연금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통상 예상 폐지로 분류된다.

- 통상 사용자가 청산 과정에 있고, 연금제도에 대한 분담금 납입을 지원할 관련 기업이 없는 경우
- 사용자가 부실폐지를 신청한 경우
- PBGC가 비자발적 폐지를 고려하는 경우
- 사용자의 파산신청이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예상 폐지로 일단 분류되면 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또는 폐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 잔류된다. GAAP 및 FASB No. 5(Accounting for Contingencies)는 부채에 이러한 예상폐지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35) 2003년 추정된 과소적립규모는 3,500억 달러였다.

PBGC의 2005년 재무제표를 보면 예상폐지로 인한 추정 순손실액³⁶⁾으로 104억 달러가 계상되어 있다. 회계원칙 상 PBGC는 연금제도를 실제 인수(take over)할 때까지는 연금제도자산을 PBGC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예상폐지로 분류된 경우의 대다수가 실제 폐지로 귀결된다. FY 2005년 말 현재 재무제표에 의하면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순손실액으로 계상된 금액이 287억 달러였는데, 이중 76%인 218억 달러가 실제 폐지로 이어졌으며, 단지 4%인 11억 달러만이 예상폐지 분류에서 벗어났을 뿐이다. 즉 종결처리된 229억 달러(287억 + 11억 달러)의 추정 클레임 중 95%가 실제 손실로 귀결된 것이다. 나아가 2004년 말 추정 클레임으로 계상된 170억 달러 중 100억 달러 이상이 2005년 중에 실제 폐지로 종결된다. 따라서 PBGC 적자(deficit)에 이러한 예상폐지로 인한 손실 추정액을 산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와 연관된 ‘폐지가능클레임’(reasonably possible termination claims)이 산출되어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용자의 채무불이행리스크가 높은 경우 - 즉 발행 채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보다 낮은 경우(즉, 정크본드 해당하는 경우) - 이러한 연금제도는 폐지가능제도(reasonably possible to terminate)로 분류한다. 2005회계년도 말 폐지가능연금제도의 과소적립액은 1,080억 달러로 추정되며, 회계원칙 상 PBGC는 이러한 리스크 노출 금액을 재무제표 상 각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단, 이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대차대조표 작성 시 계상하지는 않는다.

손실 규모 산출 시 사용되는 민간 보험사가 연금상품 책정 시에 사용하는 예정이자율이다. PBGC에 의하면 2005 회계연도 말 단일기업주플랜으로부터의 적자는 228억 달러였는데, 30년 정부채권 수익률 사용 시 적자 규모는 280억 달러로 증가하는 반면 회사채 수익률 사용 시 190억 달러의 적자 규모로 산출된다.

36) 순손실액 = 급여액의 현재가치 - 연금제도자산의 현재가치 - 사업주로부터의 추정 구상액의 현재가치

나. 평가 기준

1) 평가 방식

재무제표는 일반회계준칙(GAAP)에 의해 작성된다. 즉, 현금주의가 아니고 비용수익대응주의(accrual accounting)에 의한다. 자산과 부채는 시가로 평가된다. 부채의 시가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1974년 설립 이후 민영보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단체연금가격을 사용하여 왔다.³⁷⁾ 이 방식은 사용자가 정상 폐지의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 사용자가 시장에서 연금을 구입하여 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는 사용자가 민영보험사를 통한 것보다 PBGC를 통해 더욱 저렴하게 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원칙 견지를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 이 방식은 1974년 설립 이래 연금제도 폐지 때마다 사용된 방법으로 총 16만회에 걸쳐 이루어져왔다.

2) 장기 비용의 측정

재무제표 상 보고되는 적자 규모는 PBGC의 장기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됨에 따라 PBGC는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모델인 PIMS(Pension Insurance Modelling System)에 의해 여러 변수를 상정하여 분석을 한 결과, 2014년까지 재정 흑자를 보일 가능성은 단 2%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가졌으며, 이는 2004년 연간보고서에 보고된 바 있기도 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5년말 과소적립규모(폐지기준)를 단일기업주플랜의 경우 4,500억 달러로 자체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 1,080억 달러의 과소적립액은 '폐지가능제도'로부터 야기되는 것이다.

PBGC 과거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결국 상당한 규모의 클레임으로 발현된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폐지가능

37) PBGC는 이를 연금기준방법론(annuity-based methodology)으로 칭한다.

제도의 미적립금액 1,110억 달러 중 300억 달러 이상이 2005년 9월 현재 결국 '예상 폐지'나 '실제 폐지'로 귀결되었다. 최근 미정부 감사국(GAO) 분석에 의하면 설립 이후 PBGC가 인수하게 된 41개의 최대 클레임 중 39개사의 신용평가는 제도 폐지 3년 이전에 투자부적격 등급이었다. 이 39개의 클레임은 1975-2004년 동안 총 PBGC가 지급한 금액의 67%를 점유하였고, 이중 80%의 사업자가 제도 폐지 10년 전부터 투자부적격 등급이었다.

3) 과소적립 측정 기준

오늘 연금제도가 폐지된다는 가정(폐지기준) 하에 자산/부채를 시가 평가하여 과소적립액을 산출한다. 폐지기준에 의한 제도평가는 기업이 영속주의 하에 수행하는 제도의 재정 평가와 다르다. 부채의 산출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연금상품의 순보험료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연금상품에 대한 가격 데이터는 미국 생명보험협회(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를 통해 분기별로 서베이를 통해 수집된다. 서베이에서 보험사는 폐지되는 연금제도에 연금상품을 판매 시 일반관리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제시하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PBGC의 폐지기준에 의한 측정 방식은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의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위로급여를 받고 조기 퇴직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기업은 미래에 지급할 급여의 산정 시 사용되는 할인율을 높게 잡거나, 예상퇴직연령을 늦추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과소적립규모를 적게 산정함으로써 재정 상태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여왔다. 이로 인해 폐지된 연금제도의 가입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과소적립규모에 직면하게 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베들레헴철강의 경우 영속기준으로 84%의 적립률을 보고했지만 폐지 시점에는 단지 45%의 적립률(총 43억 달러의 과소적립규모)만을 보였다. US Airways의 조종사 연금제도는 영속기준으로 94%의 적립률을 보였지만 제도가 폐지될 당시에는 단지 33%의 적립률(총 25억 달러 과소적립)에 불과하였다.

PBGC 역사 상 가장 큰 연금제도의 폐지인 유나이티드항공사의 과소적립액은 약 180억 달러였는데, 이중 약 2/3만이 PBGC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수급권이 있는 퇴직소득 약 60억 달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연금제도 부채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는 것은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하다.

4) 과소적립 추이 및 현황

<표 IV-15>에서 보듯 PBGC가 보장하는 단일사업주제도 중 과소적립 상태를 보이는 추세는 200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80년도 초 123%의 적립률은 2003년 84%로 크게 하락하였다.

<표 IV-15> PBGC 보장 대상 연금제도의 적립 추이(1980-2003)
(단일사업주 제도)

(단위 : 백만 달러)

각년도초	적립률	과소 적립	초과 적립
1980	123%	20,156	67,894
1985	162%	11,182	203,238
1990	139%	35,689	268,773
1991	123%	34,485	194,840
1992	119%	47,528	191,829
1993	113%	59,622	166,791
1994	107%	75,569	140,000
1995	116%	37,278	182,050
1996	106%	83,071	147,098
1997	115%	47,906	223,871
1998	116%	49,242	256,005
1999	116%	54,237	291,524
2000	144%	6,566	571,403
2001	125%	38,564	378,682
2002	101%	142,573	151,793
2003	84%	312,634	48,036

자료 : Pension Insurance Data Book(2005)

한편 과소적립제도의 적립률은 <표 IV-16>에서 보듯 1980년 73%에서 2000년 91%까지 증가하였으나 2003년 77%로 하락하였다.

<표 IV-16> PBGC 보장 연금제도의 과소적립액 및 적립률 추이 (1980-2003)
(단일사업주 제도)

(단위 : 백만 달러)

각년도 초	과소적립액	적립률	PBGC 적용이율
1980	20,156	73%	8.50%
1985	11,182	72%	9.75%
1990	35,689	73%	7.25%
1991	34,485	81%	7.25%
1992	47,528	78%	6.25%
1993	59,622	78%	6.40%
1994	75,569	80%	5.65%
1995	37,278	85%	7.15%
1996	83,071	86%	5.30%
1997	47,906	88%	5.80%
1998	49,242	88%	5.40%
1999	54,237	88%	5.30%
2000	6,566	91%	7.00%
2001	38,564	89%	6.40%
2002	142,573	85%	5.70%
2003	312,634	77%	5.00%

주 : 과소적립액(미적립채무) = 부채 - 자산
자료 : Pension Insurance Data Book(2005), p.70

PBGC가 보장하는 연금제도의 미적립채무 분포는 90년대초에 비해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초에 미적립채무규모가 가장 큰 10대 연금제도의 비중은 40%를 웃돌았으나 2003년에는 11% 수준으로 하락하였다(<표 IV-17> 참조).

<표 IV-17> PBGC 보장 연금제도의 미적립채무 집중 분포(1990-2003)
(단일사업주 제도)

(단위 : 백만 달러)

각년도초	과소적립액	최대 미적립채무 보유 10개 연금제도의 비중	다음 40개 제도의 비중	여타 제도의 미적립채무 비중
1990	35,689	39.6%	18.2%	42.3%
1991	34,485	40.8%	20.0%	39.2%
1992	47,528	45.5%	16.4%	38.1%
1993	59,622	43.4%	15.7%	40.9%
1994	75,569	37.9%	13.6%	48.4%
1995	37,278	17.5%	21.2%	61.2%
1996	83,071	16.7%	19.8%	63.6%
1997	47,906	16.2%	17.7%	66.1%
1998	49,242	29.3%	14.1%	56.6%
1999	54,237	21.2%	16.6%	62.2%
2000	6,566	24.8%	16.4%	58.8%
2001	38,564	33.1%	18.8%	48.1%
2002	142,573	23.6%	18.2%	58.2%
2003	312,634	11.2%	19.5%	69.3%

자료 : Pension Insurance Data Book(2005)

업종별 과소적립 현황을 보면 2003년 현재 제조업의 평균적립률은 84%였지만 과소적립규모는 총과소적립규모의 50.9%를 점유하였다. 적립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소매업으로 71%를 보였다(<표 IV-18> 참조).

<표 IV-18> 업종별 PBGC 보장 대상 연금제도의 적립 현황(2003)
(단일사업주 제도)

(단위 : 백만 달러)

산업	평균 적립률	총부채		과소적립규모		초과적립규모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농업, 광업, 건설업	79%	23,104	1.4%	5,371	1.7%	491	1.0%
제조업	84%	872,500	53.7%	159,235	50.9%	19,624	40.9%
운송 및 전력	77%	178,449	11.0%	44,904	14.4%	4,080	8.5%
정보	97%	141,702	8.7%	17,676	5.7%	13,313	27.7%
도매업	81%	22,896	1.4%	4,728	1.5%	472	1.0%
소매업	71%	32,459	2.0%	9,645	3.1%	371	0.8%
금융, 보험, 부동산	87%	153,771	9.5%	26,208	8.4%	5,771	12.0%
서비스	79%	182,929	11.3%	41,688	13.3%	3,462	7.2%
비영리조직	84%	16,689	1.0%	3,180	1.0%	451	0.9%
총합	84%	1,624,499	100.0%	312,634	100.0%	48,036	100.0%

다. 적립금 운용 현황

PBGC의 기금은 ERISA의 규정에 의해 수입보험료로 조성된 부분(회전기금)과 폐지된 연금제도의 수탁자산 부분(신탁기금)으로 별도로 회계처리 및 운용되고 있다. 보험료로 조성된 부분은 회전기금 (revolving fund)에서 법 규제에 의해 미 정부 채권(fixed-income) 위주로 투자한다. 회전기금의 자산은 PBGC가 수탁한 연금제도의 적자 보전에 사용한다. 신탁기금의 자산은 도산한 기업으로부터 인수 받은 수탁자산과 여기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으로 구성된다. 신탁기금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

기 때문에 여기서 적지 않은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 결과 2005 회계년도말 현재 PBGC의 총자산 중 약 70%는 미정부채권 및 우량채에 투자되고 있으며, 채권의 평균 평가등급은 AAA, 평균 듀레이션(duration)은 10.4년, 평균만기는 16.6년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머지 30%는 주식(평균 베타 1.03)에 투자되고 있다. 이러한 운용정책은 노동부장관(이사회회장),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고, 운용은 외부의 전문가가 한다. FY2005의 투자수익은 약 \$40억 달러(채권에서 18억, 주식에서 21억)였다.

PBGC의 수탁 부채는 FY 2005년말 금액듀레이션 기준으로 69% 매치되었다. 이는 자산의 금리민감도가 부채 민감도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자산의 금액 듀레이션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부채의 금액 듀레이션보다는 작았다.

<표 IV-19> PBGC의 연간 투자 수익률

(단위 : %)

구분	FY 2005	FY 2004	5년 평균 수익률 (FY2005년말현재)
투자 총액	8.9	8.0	5.1
주식	15.6	15.0	0.0
채권형	6.6	5.6	8.8
신탁기금	10.3	11.5	-1.2
회전기금	7.0	5.4	8.8
PBGC 부채 수익률 ¹⁾	2.6	0.5	N.A.

주 : 1) 금리변화, 장기급여지급흐름 변화에 따른 부채의 현재가치 변동에 의해 측정되며, +수치는 PBGC 부채의 증가를 의미함.

자료 : PBGC 2005 연차 보고서

한편 적립금을 보호하기 위해 PBGC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기경보제도(Early Warning Program 또는 Risk Mitigation Program으로 불림), 요주의 기업 리스트의 발표, 과소적립 연금제도에 대한 효율차등화, 재정상태가 부실한 제도를 강제적으로 폐지하는 비자발적 폐지를 들 수 있다.

5. PBGC의 교훈

노사 간 타협의 산물로서 그리고 시장리스크를 감당하고자 하는 민영 보험사가 없었기에 연방기구로서 발족한 PBGC는 1974년 창립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지녀 왔다. 기능상 민영 보증보험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PBGC가 민영 보험사와 같이 보험원리에 따라 요율을 책정 및 조정하고, 모럴해저드를 통제하는 언더라이팅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이 처음부터 현격히 결여되어 있었다. 그 결과 출범 당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법규 개정이 있어 왔다.

1990년대 후반 수년간 흑자를 유지했고, 2000년에는 자본 규모가 약 10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이후 급격한 재정 악화로 PBGC는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즉 PBGC는 2005 회계연도 말 230억달러의 자본 잠식 상태임과 아울러 보장 대상 연금제도의 적립부족액으로 약 4,500억 달러라는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들어 발생한 IT 경기 거품의 붕괴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저금리의 지속 및 철강, 항공과 같은 특정 업종의 부진에 기인한다. 즉, 베들레헴철강, US 항공, United 항공과 같은 대기업의 연이은 파산으로 발생한 초대형 보험사고들과 함께 이러한 엄청난 잠재적 부채 규모는 PBGC가 제 2의 FSLIC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미국 조야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2006년 연금보호법이 제정되게 된 핵심 배경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왜 이렇게 PBGC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어 왔으며, 주요인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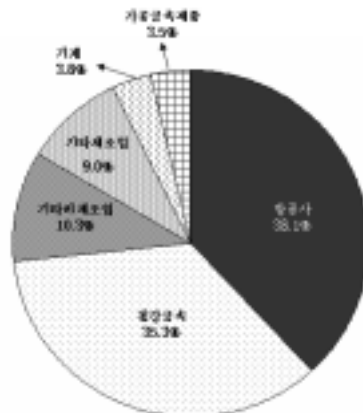
1) 리스크의 집중

PBGC의 리스크 풀(pool)은 글로벌경쟁과 굴뚝산업에서 지식기반경제

38) 초창기 PBGC가 경험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Ippolito(1989) 참조(pp.10-11).

로의 변화로 영향을 받는 산업(철강, 자동차, 항공산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³⁹⁾ 2001년 가입대상의 거의 반수가 제조업체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 업체의 상당수가 노조가 강하고 고정요율제도로 운영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업들은 모럴해저드마저 가세하여, 계약상 정기적으로 소급해서 물가상승을 보전하고 급여 인상을 위한 일정금액을 약속함에 따라 PBGC를 특히 위협스럽게 하였다. 연금급여 인상약속은 세계상의 한계로 사전에 적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연금제도 하에서 과소적립 상황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종종 큰 수준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그림 IV-2> PBGC 클레임 업종별 분포
(1975 - 2005, 단일사업주 제도)



자료 : Pension Insurance Data Book(2005)

39) 1975년에서 2002년까지 지급된 금액 중 철강산업이 94억\$로서 56%를 차지하고, 항공산업은 28억\$로서 17%, 기타는 47억\$로 28%를 차지하였다. 2002년 PBGC는 베들레헴철강회사로 인해 1개사 관련 손실로는 사상최대인 36억달러를 시험하였고, 최대연금제도(가입자 95,000명)를 수탁하여야 했다. 그러나 철강산업에 전체 가입자의 3%미만이 가입되어 있으며, 항공산업은 2%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2) 부적절한 리스크관리

PBGC가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된 또 다른 주 원인은 자산부채불일치에 있다. 통상 미국의 연금제도의 부채는 듀레이션이 장기이나 자산의 70% 정도가 주식에 투자되고, 나머지는 부채보다 듀레이션이 단기인 채권에 운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의 자산부채불일치가 심해졌고, 이에 따라 PBGC도 2000년 이후 발생한 저금리와 주식시장 침체 환경 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된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일찍이 Bodie(1996, p.97)에 의해 갈파된 바 있다. 즉 미국에서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자율 변동폭이 적었던 시절, S&L은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인식되었지만 1970년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변동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이고, 한편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매우 낮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나리오, 즉 주식시장이 침체하고 동시에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PBGC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며 따라서 보험사로서 PBGC는 그런 비상 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갈파했던 것이며, 이런 현상이 그의 언급 이후 불과 몇 년 후에 현재화되었던 것이다. 즉, 주가와 금리의 동시 하락으로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재정적 큰 타격을 입고, 이는 연쇄적으로 약 3만여개의 연금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PBGC를 강타한 것이다. 이처럼 과거 경험 상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라고 여겨졌던 것이 실제 발생한 것이며,⁴⁰⁾ 재산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례가 되고 있다.

3) 취약한 적립 방식

미국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완전적립(fully funded)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100% 완전적립이라기 보다는 최

40) Pesando(1996) p.243.

소적립요건(MFR: Minimum Funding Requirement)을 도입하여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1987년 통합예산균형법(OBRA: Omnibus Reconciliation Act)과 1994년 퇴직연금보호법(RPA: Retirement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최소적립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한 지급보증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예외조항(loop-hole)을 통해 오랫동안 이연시킬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순차적으로 연금재정의 적자를 해소해 나가지 못하게 한다. 즉, 궁극적으로 과소적립 수준을 탈피하기 위해 거액의 분담금 납입이 요망되는 순간이 오지만, 막상 그때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음을 이러한 적립 방식은 의미한다. PBGC의 최고책임자인 Steven Kandarian은 PBGC가 적자에 봉착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부채를 과소평가하게끔 하는 취약한 적립 방식을 거론한 바 있다.⁴¹⁾ 아울러 그는 분담금유예(contribution holidays)와 최대적립방식에 대한 규제(즉, 재정 흑자를 유지할 세제 유인이 없다는 점)를 또한 거론하였다.

4) 정치논리의 개입

의회로부터의 정치적 간섭은 과소적립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로비 압력에 의한 정치인들의 간섭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에 일시적인 유예 조치가 취해졌고, 이는 이미 취약한 적립 방식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2004년 4월, 잠정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부채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변경시킴으로써 기업들이 DB 플랜에 지급해야 하는 약 800억달러로 추산되는 보험료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 나아가 미의회는 PBGC에 역사적으로 보나 잠재적으로 보나 커다란 리스크인

41) 부채의 과소평가는 미래에 연금기금이 지불하여야 하는 채무를 적절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과 거의 파산상태에 도달한 기업에 대해 단지 채무제표상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철강, 항공산업에 16억달러의 추가적인 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의회의 조치들은 적립방식을 보다 강화하려는 PBGC의 계획과 바로 상충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어려움에 처한 산업들을 일시적으로 돕는 효과는 있지만 PBGC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치적 개입은 우선순위와 보상수준이 협상 대상이 되는 파산 워크아웃 단계에서도 나타난다.

PBGC의 문제는 자신을 보호할 충분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권한을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그 권한은 과소적립 연금제도에 대한 보험료 인상, 파산 시 우선청구권, 강제적 청산을 들 수 있다⁴²⁾. 또한 재무적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PBGC의 보험료 수준이나 운영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이 기관이 적절히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시킨다. Alicia Mundell의 1982년 다음과 같이 PBGC의 문제에 대해 논평한 바 있다. “PBGC의 취약성은 연금 스폰서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종종 PBGC는 기업의 파산이 임박할 때까지도 연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PBGC는 항상 재무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되고, 민간 연금 시스템을 결국 연방정부가 보장하게 되기 쉽게 된다.”

5) 부적절한 보험료 수준

의회에 의한 정치적 개입 뿐만 아니라 PBGC가 책정하는 보험료는 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당한 보험료 수준으로 결정되는 문제를 갖는다. 보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으며, PBGC가 노출되어 있는 제반 리스크

42) 도산 기업의 순자산 30%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수입보험료는 지급보험금과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PBGC의 연금채무액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 이자율과 인플레이에 일부 기인 - 보험료는 상응하게 인상되지 못하였고, 이는 불가피하게 PBGC의 적자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그나마 낮게 책정된 보험료도 제대로 완전하게 징수되지 못하였다.

6. 2006년 연금보호법의 제정과 PBGC

가. 연금개혁논의

미국 노동부는 그동안 노정되어왔던 문제점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여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개혁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5개 사항으로 구성된다.⁴³⁾

첫째, 자산과 부채의 정확한 평가

둘째, 적립목표(funding target)를 설정함으로써 적절한 적립 수준 확보

셋째, 사용자의 납부 부담금 한도의 상향 조정

넷째, 모럴해저드 여지 축소 : 즉 약속 이행능력도 없는 불건전기업이 퇴직급여를 추가로 확대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이런 경우 PBGC의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PBGC 효율체계의 개선 : 연금제도 리스크를 보다 잘 반영하는 구조로 효율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연금보험제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키자는 것이다.

첫 번째 자산과 부채의 정확한 평가는 보험회계적 측면과 관련된 것

43) White Paper, Impact on Contributions, Funded Ratios, and Claims against the Pension Insurance Program of the Administration's Pension Reform Proposal, 2005. www.dol.gov/ebsa/pdf/PBGCWP040605.pdf.

이다. 前 SEC 위원장인 레비트가 월스트리트(2005년 11월 10일자)의 기고문에서 퇴직연금회계에 정확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연금회계는 한 마디로 ‘고무줄 회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런 맥락에서 SEC는 퇴직연금제도의 세부 사항에 대해 내사(GM, 델파이, 보잉, 포드자동차, 나비스타 인터내셔널, 노스웨스트항공 등)를 벌였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⁴⁴⁾ 이자율, 기대수익률, 의료비 인플레이션, 탈퇴율 등과 같은 기초율의 가정 변화는 연금제도의 부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GM, 포드 등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채무의 현재가치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시장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인하 해온 바 있다. 예컨대 GM의 할인율은 99년에는 7.8%였으나 2004년에는 5.75%였으며, 매년 할인율이 하락함에 따라 GM의 부채 및 연금기금 부담금은 증가하였다. GM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할인율이 0.25%p 만큼 하락할 때 연간 부담금은 세전 기준으로 \$1.6억 증가하며, 연금채무는 23억 달러 증가한다. GM은 2004년 말 퇴직연금기금이 약간 과대 적립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미국 DB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자에게 의료급부를 적지 않은 경우 제공하여왔으며, 최근 GM은 회사 경영악화로 자동차노조지도부와 퇴직자들에 대한 의료비 급부 혜택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및 미래 퇴직자의 의료비 급부와 관련된 채무를 추정하고자 할 때 기업은 의료비의 인플레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추정해야하는데, GM의 경우 2005년 12월 현재 현행 인플레이로 10.5%를 적용하고, 장기 인플레이로 5%를 적용하였는데, 추세율을 1%p 인상할 경우 GM의 의료급부채무는 \$84억 증가하고, 연간 연금제도에 대한 부담금은 5.43억 달러 증가한다. 반면 추세율을 동일한 만큼 감소할 경우, 급부채무는 \$70억 감소하고 부담금

44) “Pension Inquiry Shines Spotlight on Assumptions,” 월스트리트저널, 2005년 11월 9일. 이에 의하면 SEC는 기업이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채무규모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제반 가정(이자율, 탈퇴율과 같은 기초율)을 조정해서 실제보다 더 나아보이게 하는 분식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 \$3.84억 감소한다. 이처럼 연금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통일된 할인율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립 목표의 설정과 관련된 것이다. 개정 이전 법률상 적립한도는 적립률(funded ratio, 연금제도자산/연금제도부채) 100%를 사용자가 추구해야할 목표가 아니라 최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연금제도의 적립률이 일단 100%가 되면 최소분담금은 없으며, 만약 경제환경이 악화되어 연금제도 자산이 크게 감소하여 적립률이 하락하는 경우를 준비할 동기 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Mercer는 적립률과 연금제도의 운영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적립률이 80%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의 지급을 적립비율로 제한하고, 적립률이 70% 미만이면 급여 증액을 불허하고, 50% 미만이면 추가적인 급여 발생(benefit accrual)을 금지시키는 것이다.⁴⁵⁾

세 번째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납부 부담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경기가 좋을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많이 적립하고자 할 경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사실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⁴⁶⁾ 특히 2000~2002년과 같이 주식시장이 침체하고,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많은 연금제도의 적립비율이 이 기간 순식간에 40% 이상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를 위해 'full funding limitation' 및 credit balance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사항은 모럴해저드의 여지를 가능한 없애자는 것이다. PBGC가 결국 지급할 것이므로 근로자 및 노조는 기업의 이행 능력이 없음에

45) Mercer, "Pension Funding: A Fresh Look at a Growing Crisis," A Mercer Perspective on Retirement, 2005, 1월

46) Lockart(1993)는 기업이 이익이 창출되는 기간에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것을 너무 규제한 나머지 정작 여력이 없게 되는 불경기에 과소적립이 문제가 되어 납입 분담금 수준을 증가시켜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법인세 혜택에 대한 지나친 상한 규제가 연금제도 및 PBGC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도 불구하고 연금지급을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PBGC의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PBGC 효율체계의 개선으로서, 연금제도 리스크를 보다 잘 반영하는 구조로 효율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연금보험제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키자는 것이다. 사용자의 파산리스크를 반영하지 않는 효율체제로 인해 건전한 재무상태인 기업이 불량한 기업을 보조하는 현상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⁴⁷⁾ 즉, 이러한 보조현상으로 심각한 자원왜곡 및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산리스크의 반영을 위해 신용등급을 반영하는 안이 제기된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신용등급 반영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를 내놓기도 하였다. 예컨대 Mercer는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연금제도의 적립률이 양호한 많은 회사를 차별하고, 한편 투자적격등급의 기업이 적절히 적립할 동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즉, 기업이 싫어하는 변동성(volatility)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사용자들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중단시키게 할 동기를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동효율은 오직 PBGC가 직면하는 리스크 정도, 즉 과소적립수준에 비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나. PBGC 관련 2006년 연금보호법의 주요 내용

연금개혁법안은 2005년 12월에 상하원에서 별도로 통과한 후 상하원의 최종적 절충 과정을 거쳐 2006년 8월 17일에 부시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입법화되어 2008년부터 기본적으로 발효된다. 아래에서는 PBG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의 주요 조항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⁴⁸⁾

47) Bodie and Merton(1993), Pesando(1996) 등

48) www.house.gov/ed_workforce/issues/109th/pension 참조.

1) 사용자가 연금지급 약속을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한 조항

- ① 2008년부터 발효되는 신규 목표 적립률(연금제도자산/부채)은 100%로서 7년간에 걸쳐 달성되어야 함
- ② 연금부채의 측정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수정 수익률(modified yield curve)에 근거한 이자율 사용⁴⁹⁾
- ③ 100% 완전적립을 위해 필요한 분담금을 사용자가 연금제도에 납입해야 하고 적립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5년 경과기간에 걸쳐 완전적립하며, 적립률이 90%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즉시' 100% 완전적립 요구
- ④ 적립부족액을 없애기 위해 7년간에 걸쳐 추가 분담금 납입을 사용자는 해야 함.
- ⑤ 만약 적립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5년간에 걸쳐 추가적인 분담금 납입
- ⑥ 시장변동성과 적립 변동성으로부터 연금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이자율의 smoothing을 감소
- ⑦ 만약 연금제도의 적립수준이 80% 미만이면 사용자가 credit balances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 ⑧ 사용자가 현행 부채의 150%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분담금 납입을 허용

2) 사용자와 노조의 도덕적 해이 금지 관련 사항

- ① 적립률이 80% 미만일 경우, 급여(benefits)가 즉시 지급되는 것이

49) 즉, 객관적인 장기 채권수익률에 의해 부채평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확한 표현은 duration-based three segmented yield curve based on a 24-month average of corporate bonds in the top three grade levels). 한편 단서조항으로 항공산업은 목표 적립률 도달 시간을 유예하고, 또한 역경에 처한 산업에 있는 일부 기업에도 유예 적용가능

아닌 한, 사용자와 노조가 퇴직급여 인상을 약속하거나, 공장 폐쇄에 따른 급여(shutdown benefits)를 연금제도 자산에서 지급하거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

- ② 적립률이 60% 미만일 경우, 추가적인 급여발생(further benefit accruals)을 금지하되, 단 60%를 넘게 되면, 사용자와 노조는 과거 채무상각(past service accruals)을 re-credit 할 수 있는지를 논의
- ③ 파소적립수준이 심각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임원들의 보수를 지연시키는(deferred executive compensation) 행위를 제한

3) PBGC에 대한 보험료 인상

- ① 가입자당 고정보험료를 19달러에서 30달러로 인상(적립률이 80% 미만인 연금제도에 대해 3년에 걸쳐)
- ② 가입자당 고정보험료를 19달러에서 30달러로 인상(적립률이 80% 이상인 연금제도에 대해 5년에 걸쳐)
- ③ 그 이후 연금보험료(고정)를 매년 근로자임금상승율에 연동⁵⁰⁾
- ④ 대기업주 보험료는 가입자당 현재 2.60달러에서 8달러로 인상
- ⑤ 파산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사용자는 파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 연속 3년에 걸쳐 가입자당 1,250달러를 지급토록 함

4) 근로자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공시 제공

- ① Form 5500 filing 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포함토록 함
- ② Form 4010 공시요건을 강화하고 PBGC에 보고된 4010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공시(단, 기업이 볼 때 민감한 정보는 제외)
- ③ 연금제도가 PBGC에 위협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60% 기준을 설정

50) 이는 보험료 부과의 경직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임

- ④ 적립률이 75% 미만일 경우, 불황업종에 있는 사용자에게 PBGC가 연금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권한 부여
- ⑤ 제도 폐지 후 90일 이내 근로자와 퇴직자에게 적립상태에 대해 사용자는 통보해야 함
- ⑥ Form 5500 보고 마감일 15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퇴직자에게 연차요약보고서를 제시해야 함